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51 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 강선우·허성무·김한규

김교흥 · 강훈식 · 김윤덕

서미화 · 장종태 · 정동영

김성회 • 박지원 • 김준혁

백혜련 • 박수현 • 박홍근

박해철ㆍ허 영ㆍ이수진

김현정 · 허종식 · 김원이

김병기 · 진성준 · 복기왕

김 현 • 이기헌 • 김용만

정일영 · 이재관 · 김승원

김민석 · 강준현 · 윤건영

박성준 • 전현희 • 김남근

차지호 • 고민정 • 김문수

맹성규 · 이학영 · 권향엽

염태영・황 희・윤종군

김영배 · 추미애 · 박상혁

이해식 · 송옥주 · 조승래

서삼석 • 이용선 • 주철현

홍기원 · 정진욱 · 남인순

오세희 • 서영석 • 김선민

김남희 · 소병훈 · 안도걸

김 윤 · 정혜경 · 박은정

전종덕·윤종오·박희승 신정훈·한준호·어기구 전재수·이원택·박 정 김종민·김주영·정태호 박용갑·손명수·박균택 김병주·김영호·한병도 이재강·김태선·신영대 이개호·임미애·전진숙 아라학·강득구·이병진 장철민·안규백·위성곤 양부남·김영환·문 무 문정복·김우영·한민수 문정복·비주민·김태년 원호중·이언주·조정식 민병덕의원(109억)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「관세법」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에서 한정적으로 열 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공급받아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임.

이에 「관세법」과 함께 현행법을 개정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

한 의약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005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6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10의2. 「관세법」 제91조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) 제106조제1항제10호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	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	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	
호의2, 제5호, 제9호의2 및 제1	
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	
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2	
호,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	
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	
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	
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	
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	
하고,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	
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	
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	
용하며, 제9호는 2023년 12월 3	
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	
고,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	
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	
다.	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0의2. 「관세법」 제91조제4호</u>

11. ~ 13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의2에 따른 의약품

11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